

정 정 신 고 (보 고)

2026년 7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4. 17

3. 정정 사유

- 운용/판매/신탁보수 인하
-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VaR 및 위험등급(2 → 1등급) 변동, 재무정보 확정)
- 법령 개정사항 및 전자증권법 반영 등

4. 정정요구 · 명령 관련 여부 : 아니오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1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요약정보																																
투자비용	<table><tr><th>클래스종류</th><th>총보수</th><th>판매보수</th></tr><tr><td>수수료선취-오프라인(A)</td><td>1.69%</td><td>0.90%</td></tr><tr><td>수수료선취-온라인(Ae)</td><td>1.24%</td><td>0.45%</td></tr><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Oe)</td><td>1.41%</td><td>0.62%</td></tr><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td><td>1.68%</td><td>0.89%</td></tr></table>	클래스종류	총보수	판매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69%	0.90%	수수료선취-온라인(Ae)	1.24%	0.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Oe)	1.41%	0.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1.68%	0.89%	<table><tr><th>클래스종류</th><th>총보수</th><th>판매보수</th></tr><tr><td>수수료선취-오프라인(A)</td><td>1.43%</td><td>0.72%</td></tr><tr><td>수수료선취-온라인(Ae)</td><td>1.07%</td><td>0.36%</td></tr><tr><td>수수료미징구-온라인(Oe)</td><td>1.33%</td><td>0.62%</td></tr><tr><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td><td>1.60%</td><td>0.89%</td></tr></table>	클래스종류	총보수	판매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43%	0.72%	수수료선취-온라인(Ae)	1.07%	0.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Oe)	1.33%	0.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1.60%	0.89%
클래스종류	총보수	판매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69%	0.90%																														
수수료선취-온라인(Ae)	1.24%	0.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Oe)	1.41%	0.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1.68%	0.89%																														
클래스종류	총보수	판매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43%	0.72%																														
수수료선취-온라인(Ae)	1.07%	0.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Oe)	1.33%	0.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1.60%	0.89%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 연금(C-Pe)	1.23%	0.4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 연금(C-Pe)	1.15%	0.4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보 수채감(C1)	2.29%	1.5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보 수채감(C1)	2.11%	1.4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 직연금(Op(퇴 직연금))	1.49%	0.7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 직연금(Op(퇴 직연금))	1.41%	0.70%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 연금(Ope(퇴 직연금))	1.15%	0.36%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 연금(Ope(퇴 직연금))	1.07%	0.36%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1.14%	0.35%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1.06%	0.35%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1.06%	0.27%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0.98%	0.27%		
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인력	-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 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추 가)			2026.7.30 운용/판매/신탁보수 인하, 투자위 험등급 변경(2등급(높은 위험)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5. 운용전문인력	-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 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2)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Op(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 권(추 가)			나. 종류형 구조 (2)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Op(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 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 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되는 경우 는 제외)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Op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매수 청약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추 가)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Op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매수 청약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 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되는 경우는 제외)				
	(3)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클래스종류	집합투자	판매	신탁	클래스종류	집합투자	판매	신탁
	수수료선취-오프 라인(A)	0.75	0.90	0.04	수수료선취-오프 라인(A)	0.68	0.72	0.03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수수료선취-온라인(Ae)	0.75	0.45	0.04	수수료선취-온라인(Ae)	0.68	0.36	0.03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75	0.60	0.04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0.68	0.48	0.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0.75	1.50	0.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0.68	1.40	0.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0.75	1.38	0.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0.68	1.30	0.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0.75	1.25	0.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0.68	1.20	0.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0.75	1.13	0.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0.68	1.10	0.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0.75	1.00	0.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0.68	1.00	0.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Oe)	0.75	0.62	0.04	수수료미징구-온라인(Oe)	0.68	0.62	0.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Og)	0.75	0.83	0.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Og)	0.68	0.80	0.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75	0.08	0.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68	0.06	0.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Ow)	0.75	0.00	0.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Ow)	0.68	0.00	0.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75	0.89	0.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68	0.89	0.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75	0.44	0.0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68	0.44	0.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Qp(퇴직연금))	0.75	0.70	0.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Qp(퇴직연금))	0.68	0.70	0.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0.75	0.36	0.0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e(퇴직연금))	0.68	0.36	0.0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75	0.35	0.0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68	0.35	0.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S-)	0.75	0.02	0.0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S-)	0.68	0.02	0.0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	0.75	0.27	0.0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	0.68	0.27	0.03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금(S-P)				금(S-P)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추 가)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2)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⑤(생략) (2)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주식(6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생한 것 또는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함),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하로 하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함. 나. 투자 제한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 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삭 제) (2)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주식(6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하로 하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함. 나. 투자 제한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 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__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__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 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파생결합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2)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5% VaR는 32.63%입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2)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5% VaR는 54.08%입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Op(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추 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Op(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 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되는 경우)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Op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매수 청약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추 가)						는 제외)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Op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매수 청약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 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되는 경우는 제외)					
13.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종류	집합투 자업자 보수	판매회 사 보 수	신탁업 자 보 수	일반사 무관리 회사 보수	총 보 수	클래스종류	집합투 자업자 보수	판매회 사 보 수	신탁업 자 보 수	일반사 무관리 회사 보수	총 보 수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0.75	0.90	0.04	0.00	1.69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0.68	0.72	0.03	0.00	1.43
	수수료선취 -온라인(Ae)	0.75	0.45	0.04	0.00	1.24	수수료선취 -온라인(Ae)	0.68	0.36	0.03	0.00	1.07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 용(Ag)	0.75	0.60	0.04	0.00	1.39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 용(Ag)	0.68	0.48	0.03	0.00	1.19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보수체 감(C1)	0.75	1.50	0.04	0.00	2.29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보수체 감(C1)	0.68	1.40	0.03	0.00	2.11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보수체 감(C2)	0.75	1.38	0.04	0.00	2.17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보수체 감(C2)	0.68	1.30	0.03	0.00	2.01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보수체 감(C3)	0.75	1.25	0.04	0.00	2.04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보수체 감(C3)	0.68	1.20	0.03	0.00	1.91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보수체 감(C4)	0.75	1.13	0.04	0.00	1.92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보수체 감(C4)	0.68	1.10	0.03	0.00	1.81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보수체 감(C5)	0.75	1.00	0.04	0.00	1.79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보수체 감(C5)	0.68	1.00	0.03	0.00	1.71
	수수료미징 구-온라인(Ce)	0.75	0.62	0.04	0.00	1.41	수수료미징 구-온라인(Ce)	0.68	0.62	0.03	0.00	1.33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무권유	0.75	0.83	0.04	0.00	1.62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무권유	0.68	0.80	0.03	0.00	1.51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저비용(Cg)						저비용(Cg)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기관(Cf)	0.75	0.08	0.04	0.00	0.87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기관(Cf)	0.68	0.06	0.03	0.00	0.77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랩(Or)	0.75	0.00	0.04	0.00	0.79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랩(Or)	0.68	0.00	0.03	0.00	0.71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개인연 금(C-P)	0.75	0.89	0.04	0.00	1.68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개인연 금(C-P)	0.68	0.89	0.03	0.00	1.60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개인연금(C -Pe)	0.75	0.44	0.04	0.00	1.23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개인연금(C -Pe)	0.68	0.44	0.03	0.00	1.15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퇴직연 금(Op(퇴직 연금))	0.75	0.70	0.04	0.00	1.49	수수료미징 구-오프라 인-퇴직연 금(Op(퇴직 연금))	0.68	0.70	0.03	0.00	1.41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퇴직연금(C pe(퇴직연 금))	0.75	0.36	0.04	0.00	1.15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퇴직연금(C pe(퇴직연 금))	0.68	0.36	0.03	0.00	1.07
	수수료후취 -온라인슈 퍼(S)	0.75	0.35	0.04	0.00	1.14	수수료후취 -온라인슈 퍼(S)	0.68	0.35	0.03	0.00	1.06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슈퍼-고액(S-I)	0.75	0.02	0.04	0.00	0.81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슈퍼-고액(S-I)	0.68	0.02	0.03	0.00	0.73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슈퍼-개인 연금(S-P)	0.75	0.27	0.04	0.00	1.06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슈퍼-개인 연금(S-P)	0.68	0.27	0.03	0.00	0.98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		-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					라.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 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가. 수익자총회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추 가)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추 가)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신탁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 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집합투자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__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합니다. ②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추 가) ⑥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__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합니다. ②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⑥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추 가) (2) 수시공시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결정 및 그 사유 (추 가)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추 가)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 보상기간 동안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2) 수시공시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